

여성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신입사원 남녀초임 차등지급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영창악기(주)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여성계가 항고장을 접수시키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영창악기(주)의 여성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난 92년도 노사협상에 서 임금 13% 정률인상과 장

합(상임대표 이미경)을 비롯한 13개의 여성단체 및 인천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임금구조 조정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남성근로자에게 한정된 것과 남자와 여자는 구분방법만으로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임금차별임이 분명하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같은날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고평법 위반 영창악기에 검찰 '혐의없음' 결정

‘위반사실 인정 어렵다’ 이유, 여성단체 항고장 접수

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입사년도 별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추가 임금인상분을 배분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사측이 여성에게는 근속배분을 적용하지 않아 현재 남자직원들 보다 일당 기준으로 1천5백원씩 적게 지급한 사실. 이와 함께 영창악기(주)는 남녀의 학력과 직급, 경력이 같은 경우에도 남녀초임이 3~4백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영창악기(주)의 이러한 위반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

한편 영창악기(주) 2천3백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차별임금인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고평법 위반사항을 공개한 이후 4월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영순) 인천여성노동자회(회장 최상림) 등 여성단체도 지난 6월 13일 영창악기(주) 대표이사에 공문을 발송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인천노동자회 등 13개 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민족통일 노동위원회'도 시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